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계약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시

내 용

「도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의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을 말하며,

○○○○시 ○○○○○○에서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20m이상 도로에 설치된 도로안전시설물 파손 시 신속한 정비 및 복구를 위해 [표1]과 같이 단가계약을 시행하여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표1] ○○○○시 도로안전시설물 단가 계약 현황

계약체결일	사업 내용	도급자	최초 발주금액	준공금액
2016. 12. 30.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보수		99,990,000원	297,880,000원

※ ○○○○시 제출자료 재구성

1. 사급자재 단가 과다 적용에 따른 예산 낭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거래실례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으로 하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 ○○○○○○에서는 2017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보수 공사 단가계약 자재의 원가를 산출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라 설치하려는 도로안전시설물의 규격(성능)과 가격을 비교하여 적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했다.

그러나 ○○○○시 2017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보수 공사 단가계약에서 사용된 동일 품목의 사급자재 단가 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한 결과, 시선유도봉(250*80*750)의 경우 조달단가는 13,750원이며, 업체 견적단가는 21,560원으로 동일 물품의 가격이 상이함에도 견적가격으로만 사급자재 가격을 결정하는 등 거래실례가격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표2]와 같이 사급자재의 단가가 거래실례 가격보다 약 2~3배 많게 산정되어 약 30,370천원의 예산 낭비가 되었으며, 2018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보수 공사 단가계약도 위 단가들이 반영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표2] 도로안전시설물 사급자재 단가 현황

물품명	규격	설계단가(원)	조달단가(원)	견적단가(원)	수량	차액(원)
계						30,370,630
시선유도봉	250*80*750	37,730	13,750	21,560	693	16,618,140
시선유도봉	250*80*450	27,057	12,100	19,404	760	11,367,320
충격흡수탱크	900*600*900	506,660		344,960	11	1,778,700
도로반사경	D1000	291,060	152,000	172,480	2	278,120
갈매기표지판	450*600	80,850	51,000	53,900	11	328,350

※ ○○○○시 제출자료 재구성

2. 미인증 도로안전시설물(충격흡수통) 설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 따르면 충격 흡수시설은 주행 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토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시설로 교각, 교대 앞 등의 장소¹⁾에 설치하고, 설치장소의 도로·교통 조건, 설치장소의 길이와 폭, 충격흡수시설의 수행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산업규격(KS)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 사고에 따른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시 관내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확인한 결과 예산 부족을 사유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성능인증(CC1, CC2, CC3) 제품이 아닌 가격이 저렴한 인증되지 않은 충격흡수통을 [사진1]과 같이 설치하고 있어 차량 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3. 도로안전시설물 손괴자 추적 관리 부적정

「도로법」 제91조 및 「○○○○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 복구공사²⁾를 필요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을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

1) 교각, 교대 앞, 연결로 출구 분기점의 강성구조물 앞, 강성 방호울타리 혹은 방음벽 기초의 단부, 요금소 전면, 터널 및 지하차도 입구, 추가로 도로관리자가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파손된 부분을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하며,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와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야 하며, 원인자 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걸리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손피자를 계속 추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찰청에서 도로관리청에 사고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자체적으로 도로시설물 손피자 부담으로 복구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 접수되지 않은 교통사고의 경우 「○○○○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에 따라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을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긴급한 사항일 경우 도로안전시설물을 우선 복구하고 CCTV 조사 등 도로시설물을 파괴한 손피자를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 징수하여 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업무를 소홀히 한 채 도로안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주의] 앞으로 거래실례가격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파손 행위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않도록 하시고, 인증되지 않은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